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01.
복지도시위원회

1. 제출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의약과)
나. 회 부 일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12. 0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차해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2023. 3. 28.)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 목적 조문 내용에서 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34조

제2항→제34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의 인용조항을 제34조제1항→제34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위반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5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으면 차수별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 3,000만원
- 이는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령을 위반한 후 부과되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음.
- 참고로 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서울시 자치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기준 (23. 11월 현재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자치구명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강남구	1,000	3,000	-
2	강동구	1,000	2,000	3,000
3	강북구	600	1,200	2,400
4	강서구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5	관악구	1,000	2,000	3,000
6	광진구	1,000	2,000	3,000
7	구로구	1,000	2,000	3,000
8	금천구	1,000	2,000	3,000
9	노원구	1,000	2,000	3,000
10	도봉구	1,000	2,000	3,000
11	동대문구	500	1,500	3,000
12	동작구	1,000	2,000	3,000
13	서대문구	1,000	2,000	3,000
14	서초구	1,000	2,000	3,000
15	성동구	1,000	2,000	3,000
16	성북구	1,000	2,000	3,000
17	송파구	1,000	2,000	3,000
18	양천구	1,000	2,000	3,000
19	영등포구	1,000	2,000	3,000
20	용산구	1,000	1,000	1,000
21	은평구	1,000	2,000	3,000
22	종로구	1,000	2,000	3,000
23	중구	1,000	2,000	3,000
24	중랑구	1,000	2,000	3,000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